리 포 트
포커스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주요국 감독당국의 대응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요 약

○ 주요국 감독당국은 보험서비스 지속(Continuity of Insurance Services), 지급여력비율 및 유동성 위험 관리, 보험계약자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고 있음(OECD 2020)

- 봉쇄 및 격리 조치 등에도 금융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실물경제 위축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유동성 위험이 제어되어야 함
- 또한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계약자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함

○ 코로나19 충격이 국가마다 다르고 법률 제도나 금융시스템도 같지 않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대응 수단 역시 국가별로 다르나, 대응 원칙은 유연성(Flexibility), 타이밍, 그리고 업계와의 소통(협력) 등 동일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 감독당국은 위험 확산과 예상되는 충격뿐만 아니라 감독 목표를 고려하여 우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에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IMF(2020)도 감독당국 대응의 최우선 원칙은 유연성이라고 제언함
- 또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협력을 제고함
  - 시급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불요불급한 감독 및 행정적 부담을 등을 축소시켰고, 지급여력비율이나 유동성 규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경감함
  -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감독당국은 보험계약 해석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고, 추가적인 보장을 권고하였으며, 보험업계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계약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함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과 더불어 감독당국의 유연하고 시기적절한 노력도 금융시장 안정에 일조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경기와 자산가격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준비해가야 할 것임

1. 서론

○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코로나19 충격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정부는 판데믹(Pandemic) 초기부터 3조 달러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0%로 내리고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을 실행함
- 일본 정부는 GDP의 20%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였고, 일본은행도 무제한 국채 매입을 발표함
- EU 역시 재정준칙(재정적자 GDP 3%, 정부부채 GDP 60% 유지)의 일시적 중단을 합의하였고, 국가별로 GDP의 10~20%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준비함
  - ECB도 정크본드까지 대출 담보로 인정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강력한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함
- 우리나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을 연이어 편성하였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로 낮추고 공개시장 운영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등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함

○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정부 및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데, 금융감독당국(이하, '감독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음

- 봉쇄 및 격리 조치 등에도 금융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실물경제 위축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유동성 위험이 제어되어야 함
- 또한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소비자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언택트 환경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사이버위험 및 규제 변화)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함

○ 이에 본고는 보험산업 위주로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주요국 감독당국의 대응을 개괄적으로 정리함

2. 주요국 감독당국의 대응

○ 코로나19 확산은 보험산업에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봉쇄, 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보험서비스 공급과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함
  - 자동차 운행 감소,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 행태도 이전과 달라짐
  - 언택트 사회 가속화에 대한 발 빠른 적응도 필요함
- 금리 하락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뿐만 아니라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등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역할도 발생함

○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주요국 감독당국은 ① 보험서비스 지속(Continuity of Insurance Services), ② 지급여력비율 및 유동성 위험 관리, ③ 보험계약자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고 있음(OECD 2020)[1)2)]

가. 보험서비스 지속

○ 주요국 감독당국은 비상상황에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보험 가입, 청구, 사정, 지급 등)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업무연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s)을 지속적으로 점검함

- 업무연속계획은 재난 발생 시 업무(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재해·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운 데이터의 백업과 같은 단순 복구뿐만 아니라 핵심 업무 및 고객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의미함[3)]
- EIOPA(2020)[4)]는 코로나19 충격 정도에 따라 업무연속계획을 단계별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5)]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연속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보험회사의 특정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예를 들면, 호주와 칠레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관리 능력(Claim Management Capacity)에 집중함
- 일부 국가는 업무연속계획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나 특정 내용을 권고하기도 함
  - 미국 플로리다 주 등 여러 주는 보험 인수, 보험료 수금, 손해 사정, 보험금 지급 등 보험회사 특정 업무에 대해 업무연속계획을 업데이트할 것과, 코로나19와 관련한 연방 정부나 주 정부 차원에서의 지시를 준수하도록 요구함(NAIC 2020)[6)]
  - 영국의 감독당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잠재적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싱가포르도 코로나19 충격이 큰 국가에 아웃소싱된 업무(역외 콜센터 등)의 운영위험을 파악하도록 함
  -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이버위험에 유의할 것을 요구함
-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금융업권 감독당국 간 워킹그룹 등 협력체계를 구축함

---

1) OECD(2020), "Insurance Sector Responses to COVID-19 by Governments, Supervisors and Industry"
2) 이하 내용 중 출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주요국 감독당국의 대응 조치는 동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것임
3) NAVER IT 용어사전
4) EIOPA(2020), "EIOPA Statement on Actions to Mitigate the Impact of Coronavirus/COVID-19 on the EU Insurance Sector",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11. 26),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충격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6) NAIC(2020), "NAIC Coronavirus Resource Center",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 보험회사의 업무연속 유지를 위해 주요국 감독당국은 온라인(디지털)채널 활용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함

-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보험위원회(Insurance Commissioner) 등 여러 주의 경우 손해 사정에 디지털 기술 활용을 지시함(Dodrill 2020)[7]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면방식을 최소화하도록 보험계약자를 설득하는 등 보험회사의 비대면방식 활용 제고 노력을 지원함(MAS 2020)[8]
- 디지털 및 비대면방식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회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하였고,[9] 대면방식 규제를 일부 완화함[10]
  - 싱가포르의 경우 Medisave(정부가 강제하는 개인 소유 의료저축계정)의 전화 가입을 허용함
  - 러시아에서는 온라인으로 판매될 수 있는 보험 종류가 확대됨
  - 중국에서는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 서류를 단순화하거나 없앴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함
  - 이태리의 경우 디지털 장치로 계약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함

○ 대부분의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의료·보건적 비상 상황에서 보험서비스 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행정적 부담 등을 덜어줌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프랑스,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는 임점검사를 연기하거나 축소(원격으로 필요한 감독을 수행함)하였고,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 줌
  - EIOPA(2020)[11]은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을 포함한 업무보고서 제출이나 경영공시와 관련한 기한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권고함
  -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솔벤시 테스트 결과와 재무상황 보고서 제출을 연기해주었고(지연에 따른 제재도 면제), 솔벤시 테스트도 최소한으로 축소시킴(FINMA 2020)[12]
  -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공시·업무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함(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0)[13]
- 일부 국가의 경우 규제 및 감독과 관련하여 예정된 계획을 연기함

---

7) Dodrill, J.(2020), "Emergency Order: COVID-19 Insurance Emergency", Government of West Virginia
8) MAS(2020), "MAS Urges Customers to Minimize Visits to Premises of Financial Institution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9. 18),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10)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 대면 설명 대신 비대면 녹취방식 등을 허용(전화모집 절차 준용)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함
11) EIOPA(2020), "Recommendations and Supervisory Flexibility regarding the Deadline of Supervisory Reporting and Public Disclosure-Coronavirus/COVID-19",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12) FINMA(2020), "Exemptions for Supervised Institutions due to the COVID-19 Crisis",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2020. 8. 26)」

- EIOPA(2020)[14]은 2020 솔벤시 II에 대한 영향 평가(Holistic Impact Assessment)를, 싱가포르는 대형 보험회사에 대해 시스템 위험 스트레스 테스트를 2021년으로 연기함

나. 지급여력비율 및 유동성 위험 관리

○ 코로나19 충격에 대해 주요국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자산가치 변화, 부채가치 변화,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대부분의 감독당국은 업데이트된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s), 판데믹 시나리오 또는 금융위기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대부분의 감독당국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을 신속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적·정성적 자료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등으로 요구함
  -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 위험과 관련하여 수입보험료, 보험금 지급, 해약, 외화자산 및 변액보험 관련 자료를 주 단위로,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자료를 월 단위로, 후순위채권 관련 자료는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함
  - 또한 시장위험과 관련하여 대체투자나 외화표시자산 등의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손실은 주 단위로, 투자 포트폴리오 변화는 월 단위로 모니터링함
- 주요국 감독당국은 시장위험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함
  - 우리나라, 벨기에, 스페인, 중국, 홍콩, 네덜란드 등의 경우 투자 자산 및 자산 구성 관련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함
  - 미국의 경우 주식보유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 또는 자산운용수익률과 최저보장이율 간의 이차역마진이 발생한 보험(연금)회사 등에 모니터링을 집중함
- 우리나라를 포함 주요국 감독당국은 해약 등 유동성 위험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함
  - 아일랜드는 변액보험(Unit-linked Funds)의 현금흐름을 주단위로 보고하도록 함
  - 헝가리는 해약, 보험료 납부 유예, 계약 감소 등 마이너스 현금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소비자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대규모 해약 발생 시 이를 보고하도록 함
  - 미국의 NAIC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대형 생명보험회사 그룹에 대해 유동성 관련 자료(현금흐름, 현금화 가능 자산 등)을 요구함
  - 벨기에, 스페인, 남아공 등은 상품별로 보험금 청구(실제 규모 및 잠재적 노출 정도)와 관련된 자료를, 미국의 텍사스 주는 근로자재해보험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요청함(Insurance Journal 2020)[15]
- 우리나라와 영국 등의 경우 감독당국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함
  - 우리나라는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화가 지급여력비율에 미칠 영향 분석에 초점을 둔 반면, 영국은 신용위험이 생·손보회사에 미칠 영향과 기업휴지보험과 보험료 환불 등이 손해보험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주로 분석함(PRA 2020)[16]

---

14) EIOPA(2020), 'Update on Other Measures Impacted by COVID-19 Pandemic',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15) Insurance Journal(2020), 'Texas Workers' Comp Division Issues Data Call for COVID-19 Injuries', Insurance Journal
16) PRA(2020), "Insurance Stress Test 2020 and COVID-19 Stress Testing: Feedback for General and Life Insurers", Bank

○ 주요국 감독당국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건전성 관련 규제·감독 내용을 조정함

- 대만과 EU(EIOPA 2020)[17]는 자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계산 시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경기역행적으로 조정함
  -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금에 대해 일반 주식 대비 낮은 위험계수(8~12%→6%)를 적용하여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경감함(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0)[18]
- 지급여력비율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평균 금리 사용을 허용함
  - EIOPA는 금리 변동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책임(기술적)준비금(Technical Provision) 산출 시 필요한 무위험 이자율을 주단위로 제공함(EIOPA 2020)[19]
  - 스위스 감독당국의 경우, 스위스 솔벤시 테스트 분석 시 10일간 평균 수익률 곡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FINMA 2020)[20]
  - 캐나다 감독당국도 금리위험 요구자본 계산 시 평균 금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Christensen et al. 2020)[21]
-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재무제표나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고 신용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 등을 조정함
  - 영국 중앙은행은 회계기준 적용 시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장기적 시각에서 평가해야 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함(Bank of England 2020)[22]
  -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건전성 분류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실태 평가 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는 등 유동성위험 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함[2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0)[24]
  - 칠레, 러시아, 이스라엘 등의 경우 보험회사의 자산별 투자 한도에 신축성을 부여함
- 대부분의 국가는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 확충을 강조함
  - EIOPA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의 연기를 권고하는 성명(EIOPA 2020)[25]을 발표하였고, 대부분의 EU 국가 뿐

---

of England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17) EIOPA(2020), "EIOPA Publishes Weekly Information for Relevant Risk Fre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s and Symmetric Adjustment to Equity Risk with Reference to 27 April 2020",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1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0),「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2020. 8. 26)」

19) EIOPA(2020), "EIOPA Publishes Weekly Information for Relevant Risk Free Interest Rate Term Structures and Symmetric Adjustment to Equity Risk with Reference to 27 April 2020",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20) FINMA(2020), "Exemptions for Supervised Insurance due to the COVID-19 Crisis",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21) Christensen, K. et al.(2020), "COVID-19 Response: Measures Affecting Insurers, Agents and Brokers", Fasken: Knowledge

22) Bank of England(2020), "Bank of England Announces Supervisory and Prudential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 Changes of COVID-19", Bank of England

23) 보험회사가 RP 매도를 통해 채권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발급함

2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0),「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2020. 8. 26)」

25) EIOPA(2020), "EIOPA Statement on Dividends Distribution and Variable Renumeration Policies in the Context of COVID-19",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등 비EU 국가들도 이에 동의함

- 호주와 스위스의 경우 배당 결정 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평가를 거치도록 함

다. 보험계약자 지원

○ 코로나19 충격이 가져온 비용 및 손실과 관련된 보장에 대해 감독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화함

-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어디까지 보장하고 보장하지 않을 지에 대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이를 명확히 함
  - 남아공은 코로나19에 의한 영업중단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의 유형과 보장에 필요한 조건들을 예시함(FSCA 2020)[26]
  - 미국의 뉴욕 주는 상업용 재산보험이나 기업휴지보험의 코로나19 손실 보장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함(Doody 2020)[27]
- 많은 국가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도 보험상품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지 면책되는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영국의 경우 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코로나19 정보 허브를 구축하고 관련 보험(자동차, 주거, 여행, 사망, 소득보장, 의료 등)에 대해 코로나19 손실의 보장 여부 정보를 제공함(ABI 2020)[28]
  - 캐나다와 독일의 보험협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과 관련하여 기업휴지보험 보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IBC 2020; GDV 2020)[29][30]
- 영국의 경우 상업용 재산보험에서 보장하는 영업 손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함(FCA 2020)[31]

○ 주요국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약자에게 금융지원 및 유예조치 등을 제공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보험회사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보험료 납부의 유예기간 제공, 보험계약 조건 변경, 보험료 납부 방식 조정 등 취약 계약자에게 신축적으로 대응함
- 봉쇄 조치 등으로 서류 제출이 어려운 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자동갱신이 가능하도록 함

---

26) FSCA(2020), "COVID-19, Regulatory Response: The Financial Sector Conduct Authority Stance on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Financial Sector Conduct Authority
27) Doody, S.(2020), "Letter to All Authorized Property/Casualty Insurers; Call for Special Report Pursuant to Section 308", New York Insurance Law on Liability Policies written in New York and Coverage Exclusions or Conditions That Might Pertain to Losses Related to COVID-19,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28) ABI(2020), "Coronavirus(COVID-19) Information Hub",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29) IBC(2020), "COVID-19: Canadian Home, Auto and Business Insurance Information", Insurance Bureau of Canada
30) GDV(2020), "Coronavirus: Why Insurance Cover Rarely Extends Epidemics", GDV
31) FCA(2020), "FCA Seeks Legal Clarity on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Alongside Package of Measures to help Consumers and Small Businesses",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계약자에 대한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함
  -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하는 한편, 재난상황에서의 피해기업 지원 등을 면책대상으로 지정하였고(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0),[32] 코로나 감염 확대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보험계약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함[33]
-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금 청구가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줌
  - 호주의 경우 여행자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환불하였고,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함
  - 캐나다에서 보험회사는 단체건강보험과 개인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환불함
  - 미국, 영국, 이태리, 독일 등에서도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거나 환불함
- 이러한 보험회사의 조치들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위해 캐나다 등 일부 감독당국이 관련 규정(예를 들면, 리베이트 금지법 등)을 완화함(Lefton and Carroll 2020)[34]

○ **주요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 인수 위험, 면·부책 등에 있어서 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유연성을 요구함**

- 영국, 호주의 감독당국, EIOPA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자의 행태가 바뀐 경우(예를 들면, 재택근무, 자동차 운행 감소 등) 보험계약 이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기대한다고 발표함(FCA 2020; ASIC 2020; EIOPA 2020)[35][36][37]
  -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및 미국의 대다수 주의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도 상업용 목적의 식당 음식 배달을 한시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시함
  -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은 주거보험(Residential Insurance)이 재택근무도 보장하도록 함
- 캐나다 등 많은 국가의 경우 보건·의료위기라는 제약에 따라 보험인수 절차를 단순화함
  - 캐나다는 의료보험 손해 사정 시 계약자가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한편, 신계약 체결 시 일반적인 의료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임
- 일부 감독당국, 정부 및 보험회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용과 손실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하기도 함
  - 미국의 경우 연방법(The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제정하여 코로나19 검사 비용, 치료비, 백신과 같은 예방적 의료비용 등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비용 분담을 면제해주도록 하였고, 주 별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이를 요구함
  - 일부 국가는 전화의료서비스(Telehealth Services)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통원치료 보장에 전화의료서비스를 포함시켰고, 미국의 많은 주는 전화의료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철폐함

---

3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2020. 8. 26)」
3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6. 3), "생보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 추진"
34) Lefton, H. and N. Carroll(2020), "Ontario Removes Prohibition on Auto Insurance Premium Rebates and Provides Guidance on Consumer Relief Proposals", Mccarthy Tetraut
35) FCA(2020), "Insurance and Coronavirus(COVID-19): Information for Consumers", Financial Conduct Authority
36) ASIC(2020), "ASIC Letters to General and Life Insurers in the Current COVID-19 Environment",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37) EIOPA(2020), "Call to Action for Insurers and Intermediaries to Mitigate the Impact of Coronavirus/COVID-19 on Consumers",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봉쇄 조치 등으로 집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주거보험에서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동차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렌터카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장함

○ 주요국 보험회사들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에게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함

-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인정함
- 라트비아는 보험회사가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의료보험 보장 한도를 100% 확대함
- 프랑스에서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임산부 또는 만성질환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무급병가 시에 준하여 보험회사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주요국에서는 보험회사가 코로나19에 노출된 의료진에 무료로 보험을 제공함
  - 독일에서는 독일을 지원하고 있는 타국 의료진에 대해 보험회사가 무료로 의료보험을 제공함
  - 스페인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의료진에 대해 입원과 사망을 보장하는 공동보험을 만듦
  - 미국의 코네티컷 주에서는 코로나19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무료 정기사망보험 출시가 승인되었고, 멕시코도 이를 검토함
  - 라트비아에서는 보험회사가 응급 의료진에 대해 치명적 질병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줌
- 일부 국가의 경우 보험회사가 코로나19 면책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 일본에서는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함
  - 칠레에서는 판데믹에 대한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비용을 보험회사가 보장함
- 일부 국가의 경우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상업용 재산보험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장함
  - 스위스에서 많은 보험회사들이 식당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기로 합의함
  - 독일의 일부 주는 보험회사가 영업중단 손실의 10~15%를 지급하기로 함
  - 프랑스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은 중·소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억 유로 상당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함
-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판데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함(Insurance Journal 2020)[38]

3. 평가 및 향후 과제

○ 코로나19 충격에 대해 주요국 감독당국은 보험서비스 지속, 지급여력비율 및 유동성 위험관리,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목표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38) Insurance Journal(2020), "New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Poses Risks to Chinese Insurers, Say Fitch"

○ 코로나19 충격이 국가마다 다르고 법률 제도나 금융시스템도 같지 않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대응 수단 역시 국가별로 다르나, 대응 원칙은 유연성(Flexibility), 타이밍, 그리고 업계와의 소통(협력) 등 동일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 감독당국은 위험 확산과 예상되는 충격뿐만 아니라 감독 목표를 고려하여 우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에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IMF(2020)[39]도 감독당국 대응의 최우선 원칙은 유연성이라고 제언함
- 또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데이터 및 자료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고 데이터의 정량적·정성적 질을 높이고 있음
-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협력을 제고함
  - 시급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불요불급한 감독 및 행정적 부담 등을 축소시켰고, 지급여력비율이나 유동성 규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경감함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감독당국은 보험계약 해석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고, 추가적인 보장을 권고하였으며, 보험업계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취약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함

○ 코로나19 충격에 대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노력으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보험시장을 포함하여 금융시장 혼란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 효과와 더불어 감독당국의 유연하고 시기적절한 노력도 이에 일조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례 없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으로 인해 경기와 자산가격 간의 격차 확대와 같은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준비해가야 할 것임

39) IMF(2020), "Supervisory Actions and Priorities in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Crisis"